

영등포구의회
제212회 임시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9. 3. 4.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임경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82호로 2019년 2월 1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지방정부간 포괄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해 발족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협의회명: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나. 주요내용

- 기능(안 제3조)

-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연구
-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추진

- 그 밖에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 임원(안 제5조)
 - 회장 1명, 감사 1명,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임원
- 임원 임기(안 제6조)
 -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 회의 및 의결(안 제7조)
 - 회의: 정기위원총회, 임시위원총회, 회장단 회의
 -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분담금(안 제17조): 부담금은 회장단회의에서 정함
 - 정기부담금: 연 5백만 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5. 검토의견

○ 본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서울시 자치구 15개구를 비롯해 전국 77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지방행정사례 공유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 편의를 증진코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영등포구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규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는 협의회 명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2조에서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설치 목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협의회 기능과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회장 한명과 사무총장 한명을 선출하고 권역별 복수의 부회장과 사무부총장을 선임하도록 하는 등 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는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부터 제12조에서는 회의운영 절차 및 방법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13조부터 제14조에서는 사무국은 회장이 임명한 사무국장 한 명과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사무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5조에서는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6조 및 19조에서는 협의회 재원 및 부담금,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20조에서는 협의회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감사 실시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 안 제21조부터 제22조에서는 협의회 규약개정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검토결과,

- 지방자치 발전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방 공동정책 및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포괄적 교류 및 실질적 협력 강화와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자치분권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정부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구민에게 사랑받는 좋은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구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

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제96조(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제97조(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협의회의 규약 사본

제98조(회장)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

제99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01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02조(협의체의 설립 신고 등) ① 법 제16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설립취지
2. 협의체의 명칭
3.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창립총회의 회의록
5. 대표자·임원 및 회원의 성명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